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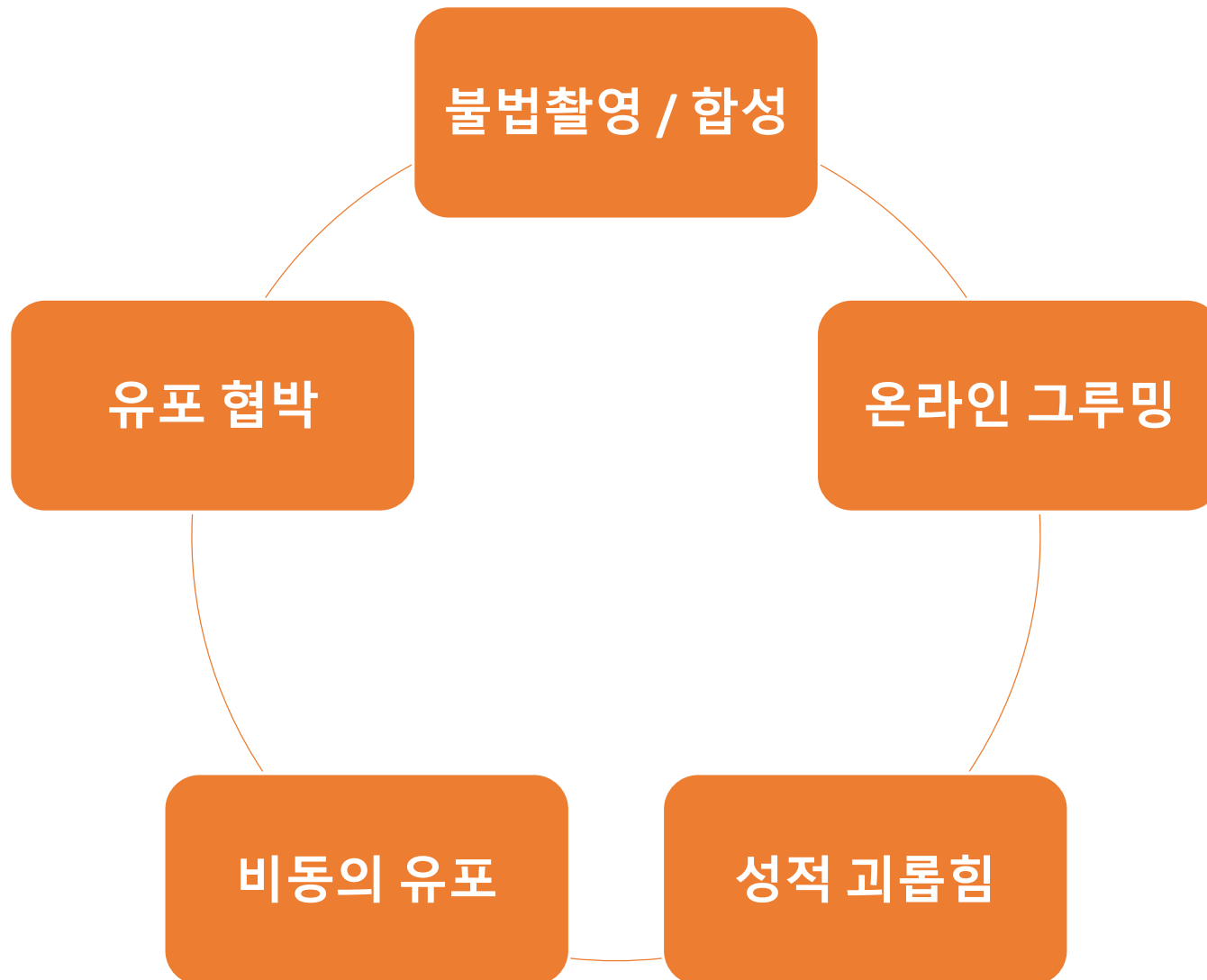
디지털성폭력의 현황과 예방교육

사이버성폭력

Cyber Sexual Violence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
촬영된 성적 이미지를 조작/착취/유포/유포 협박 하는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 '사이버' 는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발생공간

1 : 다수

파생범죄

불안피해

2차피해

유포 피해 적용 법률 < 개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텔레그램 n번방? 무엇이 바뀌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04. 2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04. 2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04. 29.>

텔레그램 n번방? 무엇이 바뀌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설>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5항. 상습으로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텔레그램 n번방? 무엇이 바뀌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신설>4항. 상습으로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텔레그램 n번방? 무엇이 바뀌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텔레그램 n번방? 무엇이 바뀌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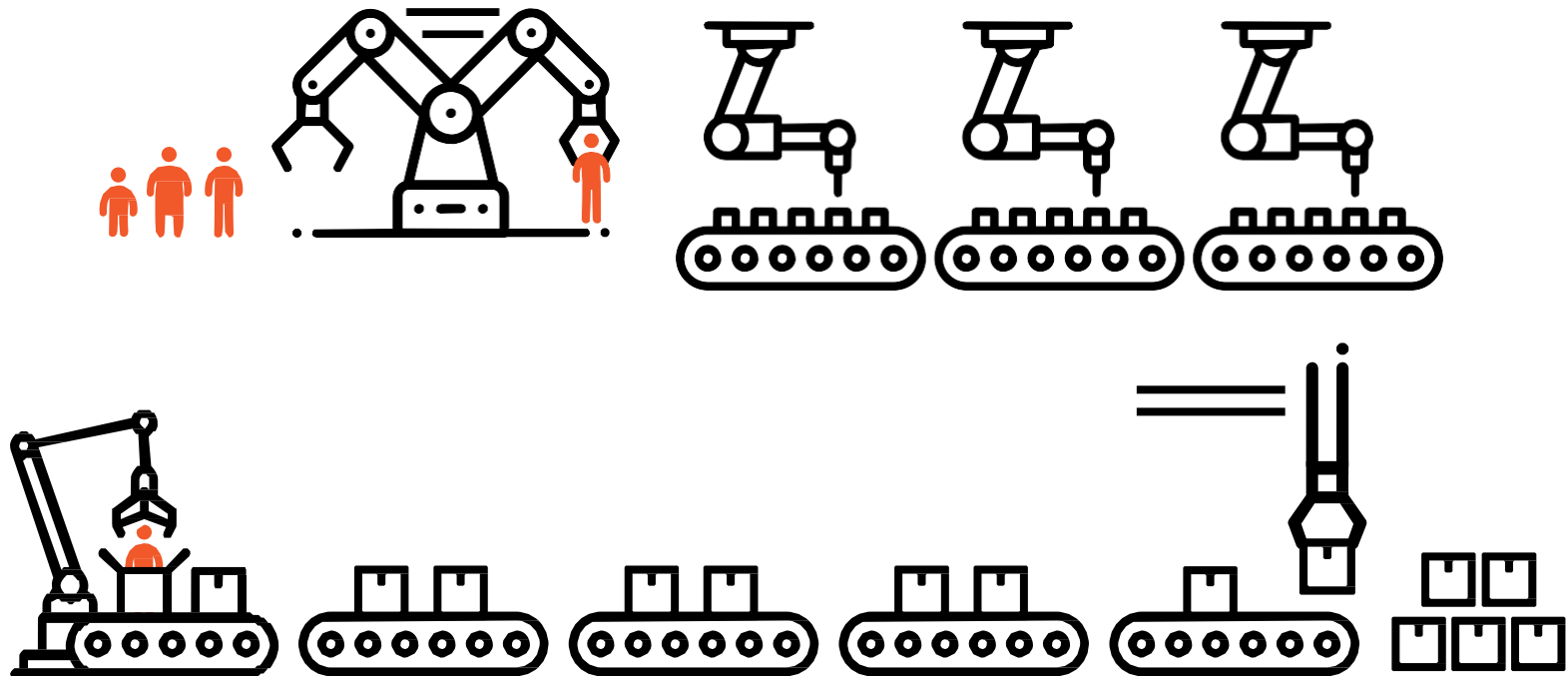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0. 3. 24.>

제15조2(예비,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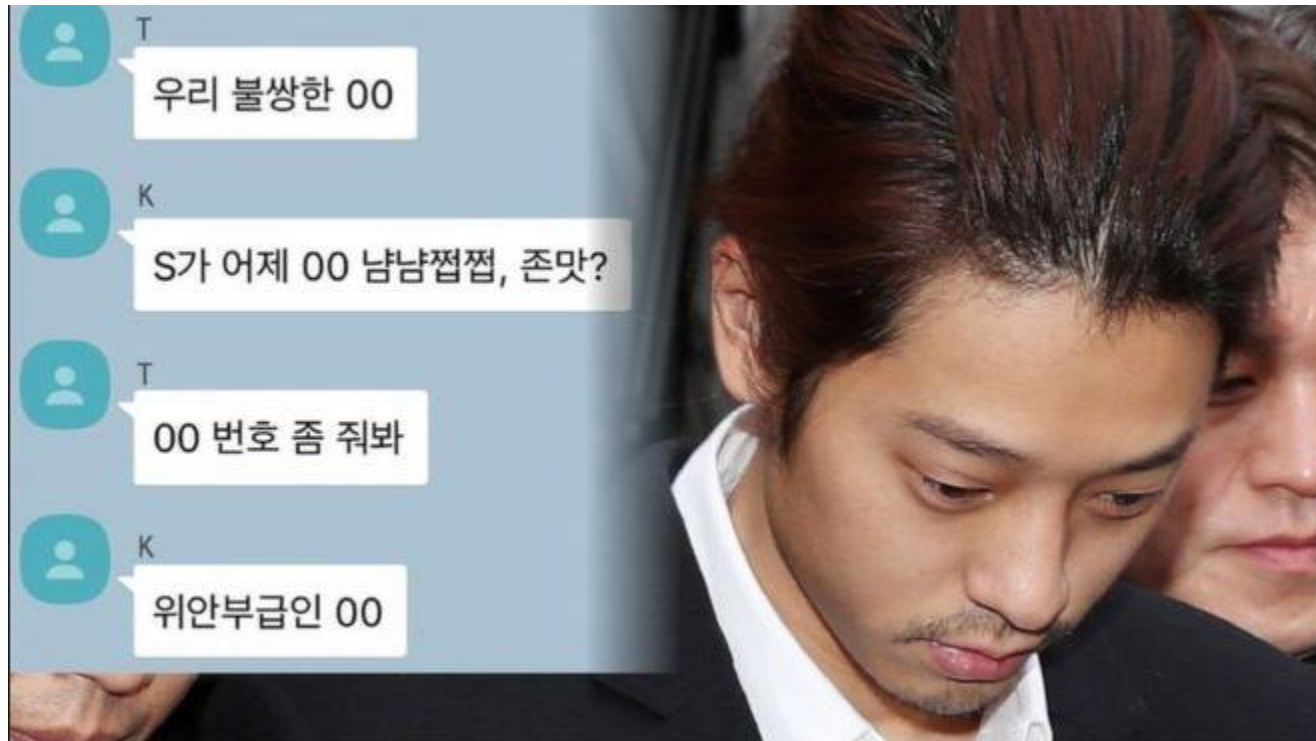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방식

- 일탈계, 벳방bj, 스폰 알바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적인 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착취
-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착취
- 착취과정에서 가혹적이고 잔인한 촬영을 강요
- 성착취 촬영물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
-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홍보용으로도 사용함



“사이버성폭력 산업”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준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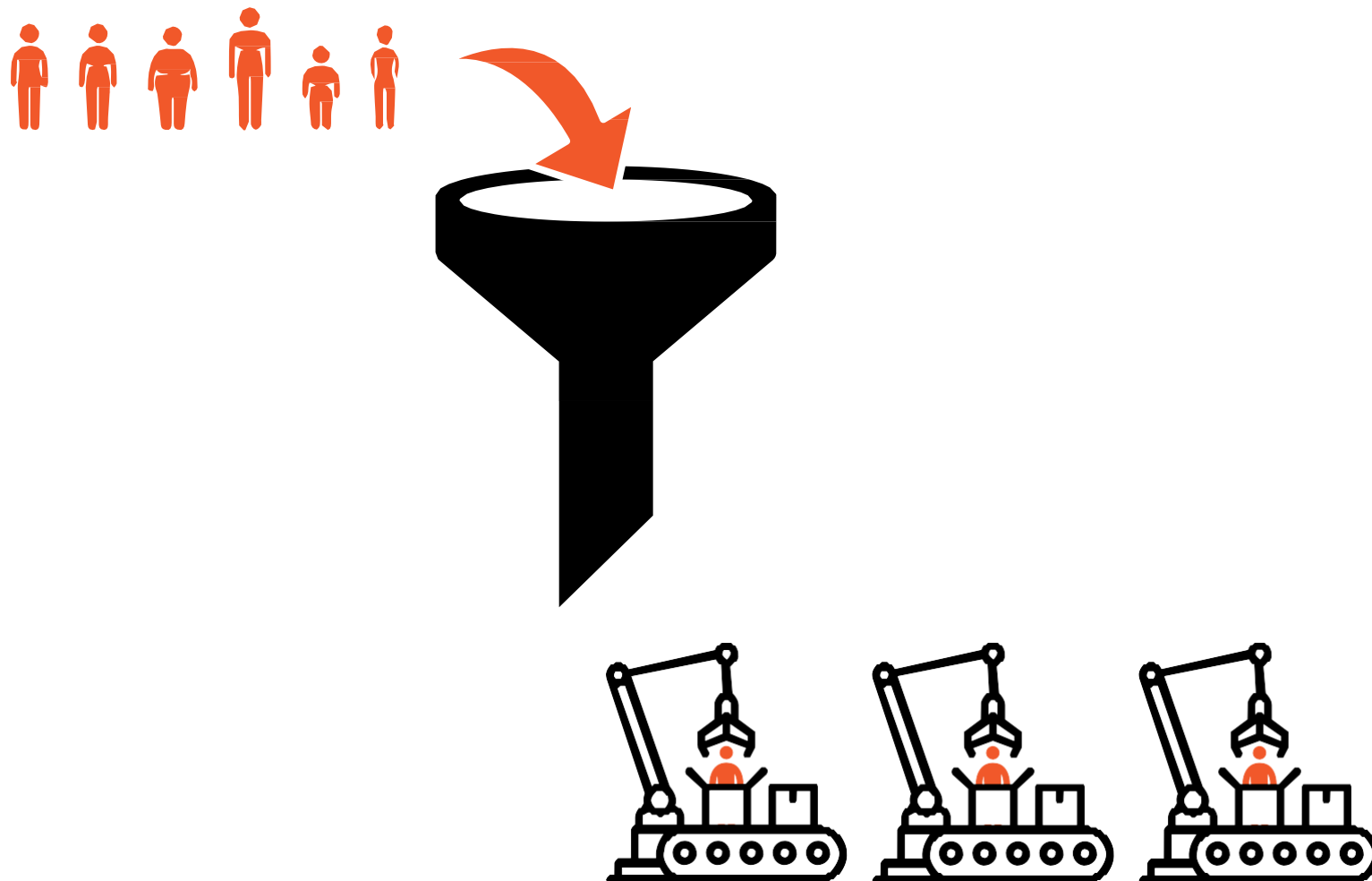


“누구나 포주가 될 수 있는 세상”



폭력의 핵심 기저 이동

2.1 산업구조 여성의 신체가 재화화 되는 성착취 구조 : 성매매와의 유사성



“사이버성폭력 산업”

성폭력 산업구조의 기반 : 남성연대

‘햇볕을 차단하면 곰팡이가 피게 마련 아닌가 ... 아마도 가장 큰 폐해는 ‘n번방’ 류의 출현일 것이다. 역시 정부는 신속했다. 속칭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들끼리 야동을 주고받거나 비공개 블로그에서 혼자 감상하는 등의 행위가 모조리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문화일보

오후여담

■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러브호텔 주변에 수상쩍은 인물들이 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쪽은 은행원들이었다. 이들은 주차 중인 차량 대수 등을 체크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손님이 끊기면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업소들이 늘어나 영업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쪽은 경찰로, 법률위반자 색출에 열정을 쏟았다. 그럼 여성가족부 예상대로 성매매는 사라졌을까. 그 답은 아마 담당 부처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매매가 디지털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물론 러브호텔의 대체재로 떠오른 고급 업소를 갈만한 여력도 없거나 디지털에도 문맹인 사회적 약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차별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런 탓일까, 덕분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야동’이었다. 정부 내의 성인군자들은 아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갑자기 불법도박이나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밝혔다. 발표 하루 전인 11일 이미 해외 사이트 895건이 차단돼 버렸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거니 체면 불고하고 야동 볼

‘야동’ 불 권리

권리를 주장하기도 쑥스러웠을 것이다.

햇볕을 차단하면 곰팡이가 피게 마련 아닌가. 하수구가 막히면 오물이 넘치듯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아마도 가장 큰 폐해는 ‘n번방’ 류의 출현일 것이다. 역시 정부는 신속했다. 속칭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

은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색출하거나 접속 차단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실효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들끼리 야동을 주고받거나 비공개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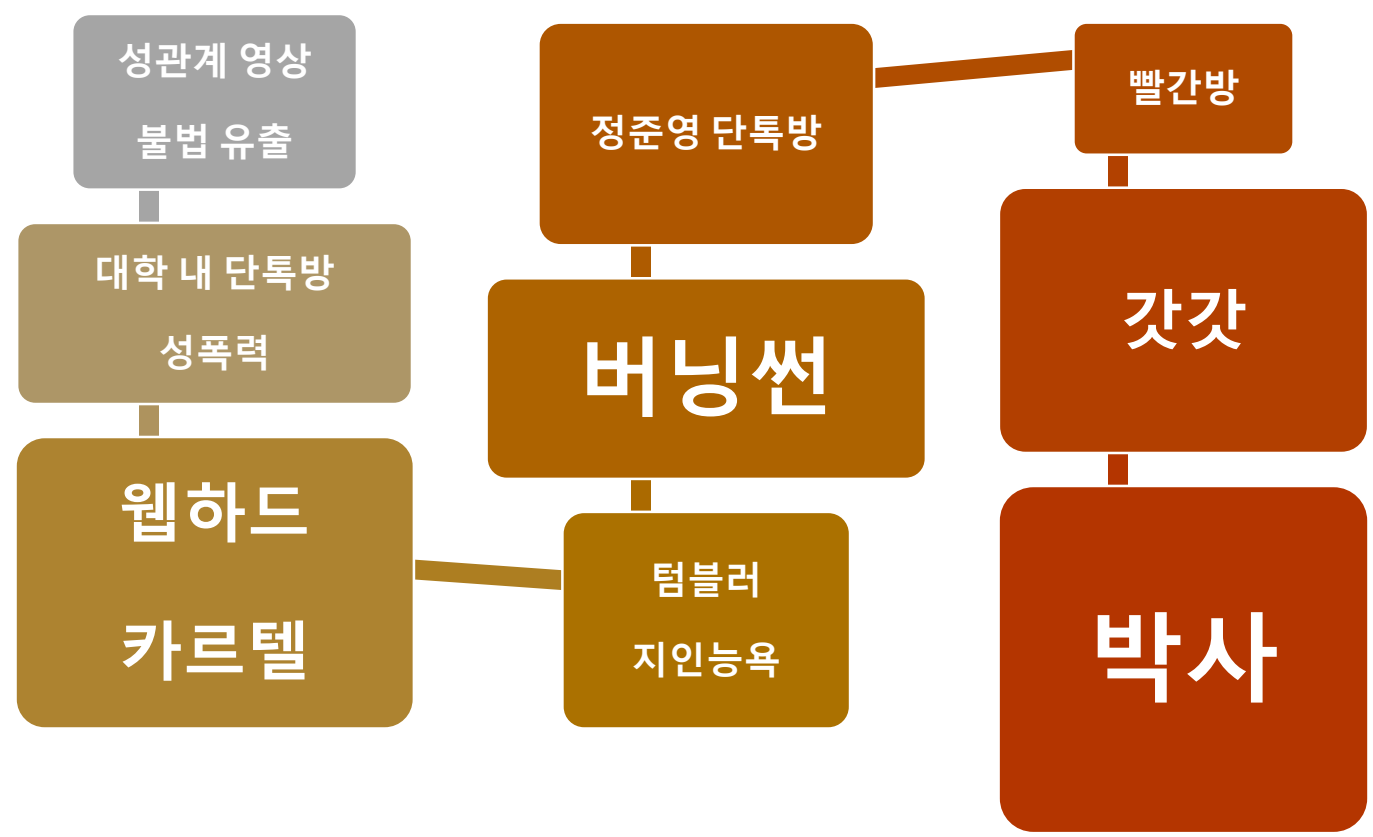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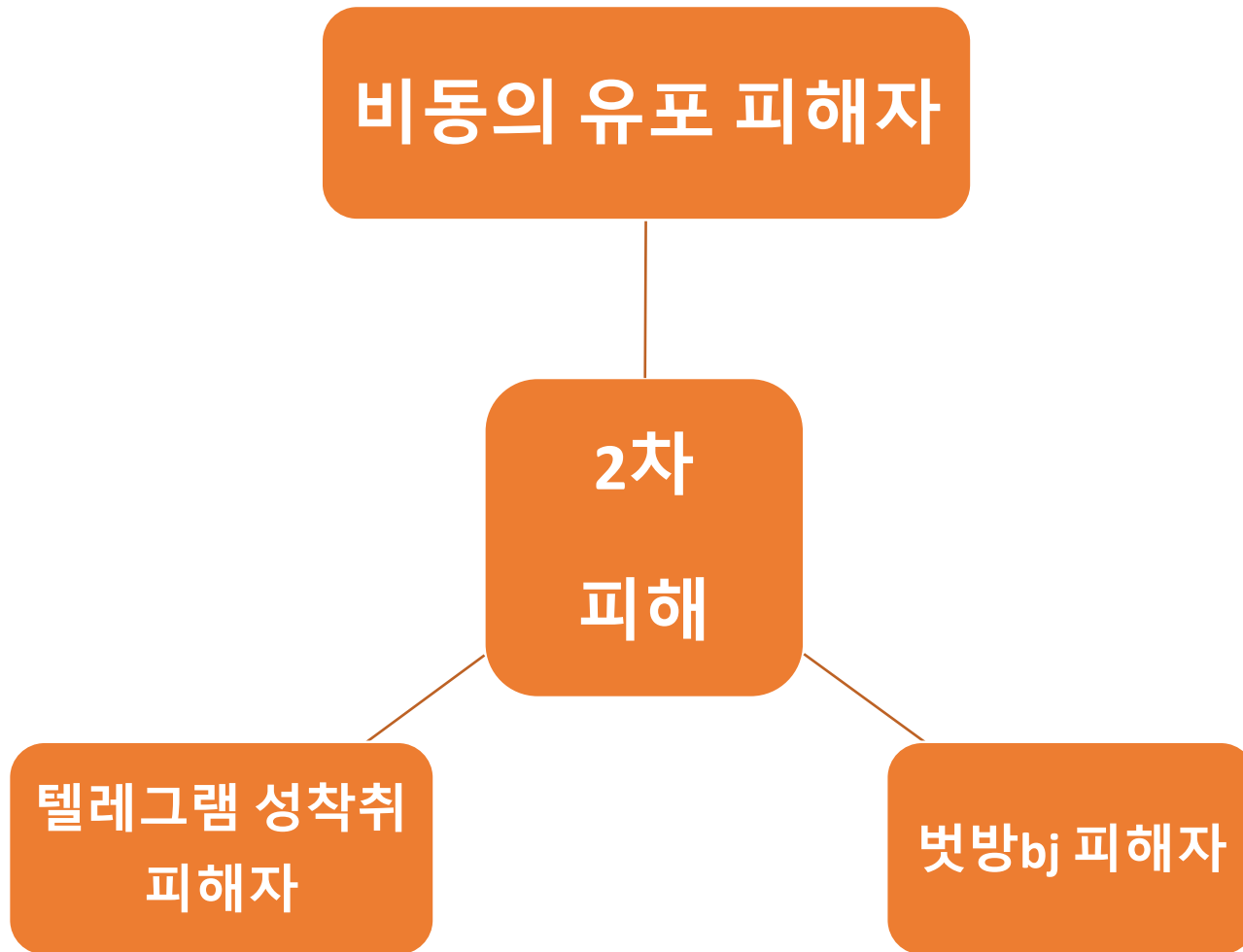
그에서 혼자 감상하는 등의 행위가 모조리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개인 사이트에 야동만 있겠는가. 간직하고 싶은 사적인 정보는 물론 사회 네트워크까지 오롯이 담겨 있을 것이다. 성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 사찰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 버전의 ‘디지털 공수처’ 아닌가. 이런 악역을 맡아야 하는 인터넷사업자도 괴롭긴 마찬가지다.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이신우 논설고문

2020년 05월 20일
38면 (오피니언)

“ 꾸준히 이어져 온 디지털성폭력의 역사 ”





2.2 문화구조

•피해자다움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피해자인지 평가하는 문화”

“이 피해자가 순결한가?”

-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적으로 피해를 당했는가?
- 평소 순결하고 도덕적인 사람인가?
- 성행위를 즐기는 문란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했는가?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피해자 다운 모습인가?”

- 웃거나 당당하지는 않은가?
-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가?
-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가?
- 일상생활을 잘 보전하지
못하는가?

피해자다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교육

-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용 현황 파악
- ✓ 아동·청소년에게 취약한 유형을 특히 잘 고려하여 교육
 -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어떤 플랫폼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
 - 아동·청소년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유형
 - 1) 온라인 그루밍
 - 2) 게임 내 성폭력
 - 3) 단톡방 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교육

✓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교육

✓ 어떤 상황이 왜 폭력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

- 성장 과정에서 쉽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교육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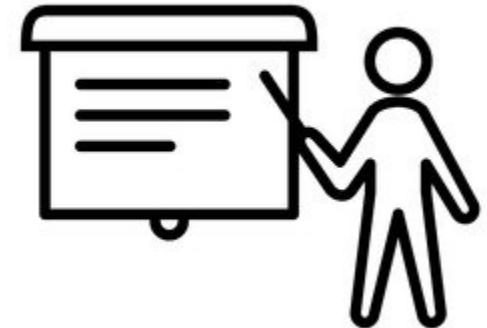
“채팅에서 만난 오빠랑 친해졌는데, 섹시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조금 무서웠는데 오빠가 자기만 볼 거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보내주었어요. 몇 번 보내주다가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싫어져서 그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유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교육

✓ 가해자/피해자/조력자 입장에서의 적절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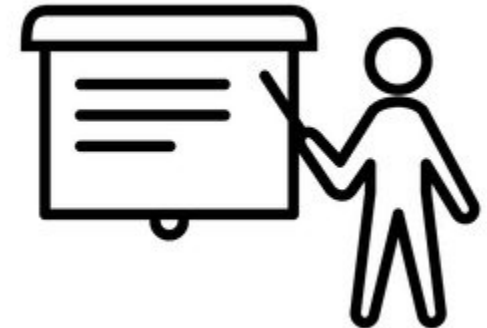
- 가해자 : 예방의 목적
- 피해자 : 피해 대응
- 조력자 : 피해자의 지지기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교육

✓ 죄책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올리지 않기 (X)
-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사진을 보내기 않기 (X)
- 채팅이나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기 (X)



피해 발생 시 확인사항

✔ 가해자가 누구지 알고 있나요?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나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포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초유포자가 누구인지 강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정황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불법촬영과 유포피해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면 언제로 추정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유포 피해,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의 경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 후 참고하여 채증 및 삭제지원을 진행합니다.

피해 발생 시 확인사항

✔ 증거를 확보했나요?

- 증거가 없는 경우 심증만으로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신저 대화라면 대화 화면을 캡처하고 전화 통화라면 녹음하여야 합니다.
-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피해촬영물을 증거 자료로 채증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경험자에게 채증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지원자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일 때 즉시 삭제할 것인지 경찰 신고 후 삭제할 것인지 피해경험자의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려 게시물의 상태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유포된 플랫폼 명칭, 게시물 링크, 유포자의 아이디, 피해경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채증하는 것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평일 오후 1시~5시 유선 상담 / 상시 메일 접수 가능
-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 상담, 삭제 연계, 수사/법률, 심리치료 연계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평일 오전 10시~5시 유선 상담 /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 02-735-8994
- <https://d4u.stop.or.kr>
- 삭제 지원 및 연계 지원

▶ 운동으로서의 교육

- 
- ✓ 실태 고발
 - ✓ 피해 대응 방법 안내
 - ✓ 피해자에게 연대
 - ✓ 가해자에게 경고
 - ✓ 폭력을 해체시킬 연대자 양성

“ 교육 또한 여성운동 ”

한사성이 온전히 싸울 수 있는 하루에 투자해주세요!

1. 네이버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검색
 - 후원하기 : 정기후원, 일시 후원

2. 페이스북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검색
 - 좋아요 및 팔로우로 소식 받아보기

감사합니다!